## KOSHA GUIDE

## C - 108 - 2017

- (3) 용접·용단 불꽃, 충격마찰, 스파크, 정전기 등 점화원이 있는 장소에서는 인화성, 가연성 물질을 충분히 격리시키고, 같은 높이의 작업장소에서는 불티의 수평 비산 가능거리인 11m 이상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(4) 화재 발생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방호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작업조건에서 용접·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여 위급상황에 적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인화성, 가연성 물질이 작업장소에서 반경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티로 인하여 발화위험이 있는 경우
  - (다) 작업장소에서 반경 11m이내 측면 또는 바닥 개구부를 폐쇄 또는 방호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
  - (라) 인화성, 가연성물질이 열전도성 칸막이, 벽, 바닥, 천정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가능성이 있는 경우
  - (마)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의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예방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
- (5) 용접·용단 작업 근로자에게는 내열성능이 있는 장갑, 보호복, 안전모,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지급, 착용하도록 관리한다.
- (6) 작업장소와 가까운 위치에 경보용 설비 또는 도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 위급 상황시 신속하게 경고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(7) 화재·폭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용접·용단 장비의 가스 차단 또는 전원 차단 후 대피한다.
- (8) 질산염, 과산화수소, 과염소산, 산소, 불소 등 산화제는 가연성 물질과 혼합 시 폭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내산성인 저장용기를 사용하고, 점화원 발생위험 장소로부터 안전한 거리 이상으로 격리시키고 관리하여야 한다.

## 4.1.2 인화성, 가연성 물질 관리

- (1) 작업장소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인화성, 가연성 물질은 용접·용단 작업장소로부터 수평거리 11m이상 격리시켜야 한다.
- (2) 인화성, 가연성 물질의 격리조치가 어렵거나 고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